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1169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 30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9. 7. 2

다. 상 정 의 결 일 자 : 2009. 7. 13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정이유

주택법」(법률 제9046호 일부개정 2008.3.28)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고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금액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마. 지원신청방법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지원대상사업 결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사. 지원금의 지급방법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지원결정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9 - 283호(2009.5.1~5.21)

- 제출의견 : 없음.

나. 관련법령 및 근거

- 주택법

다. 예산조치 : 필요시 확보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 안 제2조(적용범위)는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3조 ~ 제5조는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정한 것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안 제6조 ~ 제8조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대상의 결정, 지원금액 결정 등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기타 조목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단독, 일반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소요예산 확보 등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

- 문 : 관내 20호이상은 몇 단지가 됩니까? 대단위아파트 단지는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어, 대상을 20세대 이하로 낮추어 시행하면 어떻습니까?
- 답 : 현재 22개단지 1,855세대입니다. 20세대 이하는 주택법에 위반되어 곤란하며, 20세대 이하와 단독주택은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문 : 제5조 지원금액은 3,000만원을 세대별입까? 단지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 답 : 단지별로 최대 3,000만원입니다.

○ 문 : 임대주택의 경우 사용검사 및 사업계획 승인후 10년인데 어떻게 적용합니까?

● 답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해야 됩니다.

○ 문 : 제12조2항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도와, 3항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서로 비슷한 내용으로 중복된다고 생각되므로 어느 하나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 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 2009. 7.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12조제4호를 “제3호”로 제12조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신 · 구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 (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2 (생략)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4. (생략) 5. (생략)	제12조 (지원결정의 취소) _____ _____ _____ _____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4. (현행 제5호와 같음)